< 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7후4311 판결 >

구 의장법(2001. 2. 3.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조 제1항에서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물품의 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바,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‘물품’이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, 이와 같이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“한증막”은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며,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, 위 등록디자인은 구 의장법(2001. 2. 3.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.